

고령사회 노인범죄의 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경상국립대 법학과
박사과정 하효진

<목차>

- I. 서론
- II. 노인범죄에 관한 이론적 고찰
- III. 노인범죄 현황
- IV. 노인범죄 예방에 대한 대책
- V. 결론

I. 서론

우리나라는 현재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으로 인해 노인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고령화는 단순한 인구 구조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빈곤, 질병, 사회적 고립과 같은 구조적 문제를 동반하며, 이러한 요인들은 범죄와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UN은 전체 인구 중 만 65세 이상의 노령인구 비율이 7% 이상인 사회를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14% 이상을 ‘고령사회(aged society)’, 20% 이상을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는데,¹⁾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051만 4천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0.3%이며, 향후 계속 증가하여 2036년에는 30%, 2050년에는 40%를 넘을 것으로 전망하였다.²⁾ 즉, 현재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으며 이러한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인이 범한 범죄가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노인범죄자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청 ‘2024 범죄통계’에 따르면 전체 범죄 피의자 가운데 60대 이상은 전체의 18.8%를 차지하며 20대(18.3%)를 넘어섰으며, 특히 60대 이상 피의자 비율은 10년전인 2014년 8.8%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절도 범죄의 경우 60대 이상이 전체 피의자의 33.9%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또한 살인 범죄에서도 60대 이상 피의자는 전체의 23.2%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으며, 65세 이상 노인 수형자는 2023년 기준 3,483명으로 2017년(1,797명)대비 약 93.8%, 즉 2

1) 이상한·김재중, “고령사회에서 노인범죄에 대한 형사처우 방안”, 한양법학 제29권 제4집, 한양법학회, 2018, 79면.
2) 통계청 보도자료, “2025년 고령자 통계” 2025. 9. 29.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³⁾

종래 우리나라에서 노인범죄는 규모가 크지 않고 강력범죄보다는 경미한 범죄가 많다는 이유로 그동안 형사사법기관의 노인범죄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의 노인범죄는 과거의 경미한 일탈행위 또는 생계형 재산범죄의 수준을 넘어 강간, 살인, 폭행, 상해 등과 같은 강력범죄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⁴⁾ 이는 노인범죄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요구되는 중요한 문제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노인범죄는 빈곤, 사회적 고립, 역할 상실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나타난다는 점에서 그 특수성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우리 사회는 노인범죄를 일반 범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접근하여 처벌과 통제 중심으로 대응해 온 경향이 있다. 향후 고령화의 심화에 따라 노인범죄 문제 역시 더욱 복잡하고 다양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방안이 요구된다.

따라서 노인범죄의 특성과 발생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범죄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노인범죄의 개념과 특징, 발생 현황을 분석하고, 현행 형사사법적 대응의 한계를 검토한 후 고령사회에 적합한 노인범죄의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노인범죄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노인범죄의 개념

(1) 노인의 개념

노인에 대한 개념은 국가나 사회·경제·문화적 환경과 역사적 배경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노인의 연령은 50~70세 범위로 나라마다 다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면서 학자들 역시 연령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⁵⁾ 노인의 사전적 정의는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라는 의미이며,⁶⁾ 1951년 미국의 세인트루이스시에서 열린 제2회 국제노년학회에서는 노인의 개념을 “인간의 노령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생리적 심리적 환경적 변화와 행동의 변화가 상호작용하는 복합형태의 과정에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였다.⁷⁾

3) 데일리 굿뉴스, “노인범죄의 그늘: 초고령화 사회서 범법자로 전락”, <https://www.good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451001>, (최종검색일자: 2026.5.14.)

4) 이상한·김재중, 앞의 연구서, 80면.

5) 이상한·김재중, 앞의 연구서, 80면.

6)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노인’,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최종검색일:2026.5.15.)

7)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Gerontology, Report on the 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f Gerontology, 1951, p. 5

현재 우리나라의 각종 법률에서도 노인과 관련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각 법률의 용어도 통일되어 있지 않다. 예컨대 ‘노인’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고령자’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용어가 다양하게 사용 되어지고 있다.

UN 통계자료에서는 관행상 60세 이상의 사람들을 노인(Olderperson)으로 지칭하지만, 유럽연합의 통계기관(Eurostat)은 65세 이상의 사람들을 노인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국제보건기구(WHO)도 65세 이상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 이유는 65세가 가장 통상적인 정년연령이기 때문이다.⁸⁾

노인의 연령기준에 관해서는 현재 「노인복지법」제1조의2 제5호에서 ‘노인학대 관련 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노인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노인을 65세 이상으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에서는 ‘노인 등 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도 「노인복지법」과 마찬가지로 노인을 65세 이상으로 보고 있다. 또한, 「기초연금법」 제3조에서 기초연금의 수급권자를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의 제1항에서도 노인수용자는 ‘65세 이상인 수용자’로 규정함으로써 노인을 65세 이상인 자로 보고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노인의 연령을 대체로 65세를 기준연령으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대법원에서도 일반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 활동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0세를 넘어 65세까지로 인정함으로써 고령자 연령기준의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⁹⁾

노인범죄의 처벌과 대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노인범죄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의 문제가 중요하고, 그 개념을 정의하는데 있어서 ‘노인’의 연령적 기준이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 수 없다.¹⁰⁾ 노인의 연령에 대한 기준은 계속해서 상향되는 추세이며, 향후 수명이 더 연장되면 70세 이상으로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¹¹⁾

(2) 노인범죄의 개념

형법이 형벌을 통해 금지하고 있는 행위유형을 범죄라고 한다면, 형식적으로 범죄란 ‘법률에 형벌이라는 법효과가 부과되어 있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¹²⁾

이러한 범죄의 개념에 관하여는 형식적 범죄개념과 실질적 범죄개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형식적 범죄개념은 범죄를 형벌법규에 의하여 형벌을 과하는 행위라고 보

8) 김지형, “노인범죄의 대책에 관한 비교법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8면.

9)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10) 선영화, “노인범죄자 처우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32면.

11) 이영란, 「범죄노인의 처벌에 관한 연구 - 노인연령별 차별화를 중심으로-」, 법학논집 제15권 제3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93면.

12) 김성돈, 「형법총론(제8판)」, SKKUP, 2022, 127면.

며 형벌을 과하기 위하여 행위가 법률상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가를 문제삼는다. 실질적 범죄개념은 범죄를 그 내용적인 실질을 기준으로 정의한 것이므로 이러한 관점에서는 접근방법의 다양성 때문에 통일적이고 일관된 범죄개념을 얻기 어려우며, 형식적 범죄개념은 범죄의 내용적 실질을 묻지 않고 일정한 조건을 갖추었을 때 범죄로 인정하기 때문에 범죄를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유책한 인간의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¹³⁾

노인범죄가 무엇인가에 관하여 실정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많은 학자들은 통상적인 노인범죄를 60세 이상의 노인이 행하는 형벌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정의¹⁴⁾하거나, 만 60세 이상의 노인이 행하는 현재 한국의 형벌에 성문화된 형벌법규에 규정되고 있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객관적인 법질서를 위반하고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행위,¹⁵⁾ 만 60세 이상의 사람이 규정되어 있는 형벌법규를 위반하는 행위¹⁶⁾로 정의하여 노인범죄에서 노인의 연령기준은 만 60세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노인범죄를 만 61세 이상의 노인에 의해서 행하여지는 형벌법규에 저촉되는 행위¹⁷⁾로 정의하였다. 한편, 통계분석, 대검찰청의 범죄분석과 같은 통계는 61세와 71세 이상 범죄인을, 법무연수원의 범죄백서에는 61세 이상 범죄인을 특별히 구분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대체로 우리나라의 노인범죄는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자료에 근거해 61세 이상을 노인범죄의 연령 기준으로 삼고 있다.¹⁸⁾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주요 복지·형사사법 관련 법률이 대체로 65세를 기준연령으로 활용하고 있고, 초고령사회 논의와도 연계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65세 이상 노인이 행위주체가 되어 형벌법규에 위반되는 행위를 노인범죄로 정의하고자 한다.

2. 노인범죄의 특징

(1) 신체적 특징

노년기에는 청장년층에서 경험하지 못한 신체의 조직기능의 퇴행과 쇠퇴를 경험하게 되는데 세포와 골격 등으로 대표되는 구조상의 쇠퇴와 감각기관의 기능저하로 외부 자극에 대해 둔하게 반응하며, 키가 줄어듦과 두발이 변하고 주름살이 늘어나는 등의 외부적 변화는 물론이고 이에 따른 자신감 상실, 질병이나 동맥경화,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에 노출되기도 한다.¹⁹⁾ 또한, 이러한 신체의 변화는 노인들로 하여금 범

13) 신동운, 「형법총론(제5판)」, 법문사, 2010, 73면.

14) 이승철, “한국 노인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형법법계를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제11권 제1호, 한국경찰학회, 2009, 33면.

15) 강수진, “노인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유럽행정학회보 제6권 제2호, 한국유럽행정학회, 2009, 7면.

16) 광대경, “노인범죄의 원인과 실태 및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43집, 한국공안행정학회, 2011, 면.

17) 김기현, 「고령화시대의 노인 범죄 실태분석을 통한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제52호, 한국교정학회, 2011, 160면.

18) 박숙완, “노인범죄의 원인 분석 및 대책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20면.

죄에 대한 두려움이 증가하고 외부자극에 대해서 과민반응을 보이는 현상을 발생시키며, 감각기관의 둔화와 함께 외부자극에 대한 반응지연이 일반화되어 치명적인 사고를 야기하고 있다.²⁰⁾ 현대의학이 발달하면서 현재의 노인은 과거에 비해 신체적 기능이 매우 양호해졌지만 노인의 생리적 욕구도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노인이 많을수록 증가하게 된다. 이는 살인, 성범죄, 폭행, 협박 등 강력범죄와 폭행범죄의 증가를 초래하고 있으며, 70대 보성어부 연쇄살인 사건²¹⁾, 80대 노인의 아동 성범죄 사건,²²⁾ 90대 치매 여성을 성폭행한 70대 이장 사건,²³⁾ 등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또한 교통범죄의 경우 노화과정에서 근육, 인대, 뼈, 관절, 연골등의 약화로 인해 체력의 저하, 유연성 부족, 감각 둔화 및 동작의 범위가 적어지게 됨으로써 운전 중 발생하는 상황들에 대해 필요한 운동능력을 발휘할 수 없어 증가하고 있다.²⁴⁾

(2) 심리적 특징

노인의 심리적 특성으로는 우울증, 강박관념, 증오심, 불면증, 불안감, 자신감 상실 등이 있다. 이러한 심리적 특성은 가족 사이의 변화된 관계를 시작으로 사회관계가 변화하는 현상으로 나타나면서 적응장애가 나타나고 이는 범죄 등으로 발전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²⁵⁾ 또한, 노화현상의 지연은 노인들의 생리적·사회적 욕구를 높이는 기제가 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제도가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노인들은 자신들이 불합리한 사회제도의 피해자라는 인식을 하게 되고 이는 사회에 대해 분노를 하게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고 주로 강력범죄나 폭력범죄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며,²⁶⁾ 우울증에 의한 자살, 정서적·심리적 불안으로 인한 자기방임 또는 아동에 대한 성폭력 등의 범죄²⁷⁾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²⁸⁾

19) 전정주, 「고령화사회에 있어서 노인범죄」, 법무보호연구 제2권,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2016, 187면.

20) 박상진·김창근,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범죄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제5권 2호, 한국범죄심리학회, 2009, 6-7면.

21) 전남 보성의 70대 어부 오모씨(당시 72세)가 2007년 8월에 여행 온 10대 남녀 2명을 자신의 배에 태우고 나서 여성을 성추행하기 위해 남성을 먼저 바다로 밀어 살해하고 저항하는 여성도 바다에 빠뜨려 살해하였으며, 그리고 같은 해 9월에도 자신의 배에 탄 20대 여대생 2명을 같은 방법으로 살해하였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도4347 판결.)

22) 연합뉴스, “80대 노인 반복된 아동 성범죄...고령자 선처 안돼”, <https://m.yonhapnewstv.co.kr/news/MYH20220516020700641> (최종검색일: 2025.5.16.)

23) 고성시사신문, “노인성범죄, 정부의 대폭적인 손길 필요하다”, <https://www.gsc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449> (최종검색일: 2025.5.16.)

24) 이상한·김재중, 앞의 연구서, 82면.

25) 이영남, 「노인범죄의 실태 및 분석을 통한 대응방안 연구」, 경찰학논총 제6권 제2호,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11, 227면.

26) 이상한·김재중, 앞의 연구서, 83면.

27)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폭력범죄 범죄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연령대는 19세~30세로 21.8%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은 61세 이상이 20.7%를 차지하였다. 대검찰청, 「범죄분석」, 2025, 88면.

28) 선영화·강동욱, “노인범죄 특성 및 노인범죄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도입을 위한 시론”, 법과 정책 연구 제18권 제4호, 한국법정책학회, 2018, 6면.

(3) 사회·경제적 특징

사회적으로는 대부분 정년퇴직이나 사회적 역할의 상실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 노인들은 사회제도 내에서 정당한 수단을 동원하여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도 밖에서 그 수단을 찾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가중한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의 결과는 횡령이나 사기 범죄와 같은 지능형 범죄를 유발하고 증가시킨다.²⁹⁾

또한, 최근 발생한 80대 노인의 단팥빵 절도 사건과 같이³⁰⁾극심한 생활고나 경제 활동에서 소외되고 있는 노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장발장형 범죄라고 불리는 생계형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³¹⁾노인범죄에 관한 여러 연구들도 노인이 일으키는 범죄에 있어서 은퇴와 실직과 같은 경제적 요인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른 노인들의 조기은퇴가 노인들로 하여금 불법적인 대안을 모색하게 하며, 노인의 상대적 빈곤이 단순절도와 같은 생계형 범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³²⁾

Ⅲ. 노인범죄 현황³³⁾

1. 노인범죄의 일반적 현황

<표1>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전체 범죄자 대비 노인범죄자의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분석 결과 노인범죄자는 2015년 107,751명에서 2024년 160,843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전체 범죄자 대비 노인범죄자의 점유율 역시 2015년 5.53%에서 2024년 11.45%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1년 이후에는 노인범죄자의 비중이 10% 이상을 유지하였으며, 2024년에는 전체 범죄자 10명 중 1명 이상이 노인범죄자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노인범죄가 단순히 예외적 현상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주요 범죄문제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노인범죄의 증가가 단순히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표1-1>에서 고령인구 증가율과 노인범죄자 증가율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5년 6,775,101명에서 2024년 10,256,782명으로

29) 이상한·김재중, 앞의 연구서, 82면.

30) 2026년 5월 9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80대 노인이 병든 남편을 먹이기 위해 단팥빵 5개를 훔쳐 절도 혐의로 검거되었다. 서울신문, “병든남편 먹이려고 단팥빵 훔친 할머니 붙잡혀.. 경찰도 울었다”,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6/05/09/20260509500032> (최종검색일:2026.5.16.)

31) 김상수, “노인범죄의 실태 분석 및 대책에 관한 연구”, 자치경찰연구 제7권 제2호, 한국자치경찰학회, 2014, 62면.

32) 선영화, “노인범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21면.

33) 본 연구에서는 노인범죄의 개념을 65세 이상 노인이 행한 범죄로 정의하되, 범죄통계 자료의 연령구분 체계상 61세 이상 범주를 활용한 통계가 포함되어 있어, 현황 분석에서는 통계상 기준에 따라 61세 이상 자료를 함께 검토하였다.

증가하여 51.4%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같은 기간 노인범죄자는 4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까지는 노인범죄 증가율이 고령인구 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2019년의 경우 고령인구 증가율은 18.5%인 반면 노인범죄 증가율은 35.0%에 달하였다. 이는 노인범죄 증가가 단순히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결과가 아닌 빈곤, 사회적 고립, 가족기능 약화, 역할상실 등 사회·경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1> 전체 범죄자 대비 노인범죄자 현황(2015~2024년)

(단위: 명, %)

| 연도 \ 구분 | 전체범죄자 | 노인범죄자 ³⁴⁾ | 점유율 |
|---------|-----------|----------------------|-------|
| 2015 | 1,948,966 | 107,751 | 5.53 |
| 2016 | 2,020,196 | 118,222 | 5.85 |
| 2017 | 1,861,796 | 121,677 | 6.54 |
| 2018 | 1,749,459 | 128,845 | 7.36 |
| 2019 | 1,754,808 | 145,471 | 8.29 |
| 2020 | 1,638,387 | 148,462 | 9.06 |
| 2021 | 1,359,952 | 136,250 | 10.02 |
| 2022 | 1,359,389 | 136,663 | 10.05 |
| 2023 | 1,360,807 | 145,305 | 10.68 |
| 2024 | 1,405,185 | 160,843 | 11.45 |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2015-2024 자료 재구성.

<표1-1> 고령인구 증가율과 노인범죄자 증가율(2015~2024년)

(단위: 명, %)

| 구분 연도 | 고령인구 ³⁵⁾ | 노인범죄자 | 인구증가율 | 범죄증가율 |
|-------|---------------------|---------|-------|-------|
| 2015 | 6,775,101 | 107,751 | 0.0 | 0.0 |
| 2016 | 6,998,123 | 118,222 | 3.3 | 9.7 |
| 2017 | 7,264,288 | 121,677 | 7.2 | 12.9 |
| 2018 | 7,650,408 | 128,845 | 12.9 | 19.6 |
| 2019 | 8,026,915 | 145,471 | 18.5 | 35.0 |
| 2020 | 8,518,669 | 148,462 | 25.7 | 37.8 |
| 2021 | 8,570,450 | 136,250 | 26.5 | 26.4 |
| 2022 | 9,018,412 | 136,663 | 33.1 | 26.8 |
| 2023 | 9,501,990 | 145,305 | 40.2 | 34.9 |
| 2024 | 10,256,782 | 160,843 | 51.4 | 49.3 |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최종검색일: 2026.06.05.) 및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 재구성.

34) 65세 이상

35) 65세 이상

또한, <표1-2>는 노인인구 10만 명당 범죄율을 산출하여 고령화에 따른 인구증가 효과를 통제한 결과를 보여준다. 노인인구 10만 명당 범죄율은 2015년 1,590.4명에서 2019년 1,812.4명으로 증가하여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이후 다소 감소하였으나 2024년에도 1,568.2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범죄자의 절대적 증가가 단순히 노인인구 증가에 의한 결과만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만약 노인범죄 증가가 전적으로 고령화에 따른 인구 증가 때문이라면 인구 10만 명당 범죄율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상당 기간 동안 범죄율이 상승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전체 범죄자 중 노인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표1-2> 노인인구 10만명당 범죄율 추이(2015~2024년)

(단위: 명, %)

| 연도 \ 구분 | 고령인구 | 노인범죄자 | 10만명당 범죄율 |
|---------|------------|---------|-----------|
| 2015 | 6,775,101 | 107,751 | 1,590.4 |
| 2016 | 6,998,123 | 118,222 | 1,689.4 |
| 2017 | 7,264,288 | 121,677 | 1,674.9 |
| 2018 | 7,650,408 | 128,845 | 1,684.2 |
| 2019 | 8,026,915 | 145,471 | 1,812.4 |
| 2020 | 8,518,669 | 148,462 | 1,742.8 |
| 2021 | 8,570,450 | 136,250 | 1,589.8 |
| 2022 | 9,018,412 | 136,663 | 1,515.4 |
| 2023 | 9,501,990 | 145,305 | 1,529.2 |
| 2024 | 10,256,782 | 160,843 | 1,568.2 |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및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 재구성.

2. 노인범죄³⁶⁾의 유형별 현황

(1) 강력범죄 발생 추이

<표2>의 2024년 강력범죄(흉악) 범죄자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19세~30세가 30.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31세~40세(18.5%), 41세~50세(14.3%), 18세 이하(12.7%), 51세~60세(12.4%), 61세 이상(12.0%) 순이다.

10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18세 이하, 19세~30세, 61세 이상의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한 반면에, 31세~40세, 41세~50세, 51세~60세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였다. 특히, 감소된 연령층에서는 41세~50세의 비중이 6.2% 감소하여 가장 큰

36) 만 65세 이상

감소폭을 보였다. 노인 강력범죄(흉악)의 발생비는 2015년 노인 인구 10만명당 21.6건에서 이후 증감을 반복하다 2024년에는 27.4건으로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지난 10년 동안 고령자 강력범죄(흉악)의 발생비는 26.7% 증가하였다.

<표2> 강력범죄(흉악)³⁷⁾ 범죄자의 연령별 분포 추이(2015~2024년)

(단위: 명(%))

| 구분 연도 | 18세 이하 | 19세~30세 | 31세~40세 | 41세~50세 | 51세~60세 | 61세 이상 |
|----------|-----------------|------------------|-----------------|-----------------|-----------------|-----------------|
| 2015 | 2,713 (8.7) | 8,414 (27.0) | 6,689 (21.4) | 6,382 (20.5) | 4,671 (15.0) | 2,321 (7.4) |
| 2016 | 3,343 (10.1) | 8,825 (26.6) | 6,812 (20.5) | 6,456 (19.4) | 5,117 (15.4) | 2,679 (8.1) |
| 2017 | 3,463 (9.5) | 10,157 (26.6) | 7,281 (20.5) | 6,704 (18.5) | 5,516 (15.2) | 3,169 (8.7) |
| 2018 | 3,509 (9.7) | 10,275 (28.5) | 6,769 (18.8) | 6,516 (18.1) | 5,660 (15.7) | 3,281 (9.1) |
| 2019 | 3,665 (9.9) | 10,713 (29.0) | 6,888 (18.7) | 6,522 (16.9) | 5,655 (15.3) | 3,750 (10.2) |
| 2020 | 3,134 (9.0) | 10,183 (29.2) | 6,560 (18.8) | 5,836 (16.7) | 5,431 (15.6) | 3,723 (10.7) |
| 2021 | 3,606 (10.7) | 10,772 (31.8) | 6,214 (18.4) | 5,131 (15.2) | 4,640 (13.7) | 3,465 (10.2) |
| 2022 | 4,893 (11.9) | 14,478 (35.1) | 7,265 (17.6) | 5,579 (13.5) | 5,001 (12.1) | 3,977 (9.7) |
| 2023 | 4,861 (12.3) | 13,318 (33.6) | 7,006 (17.7) | 5,362 (13.5) | 4,972 (12.5) | 4,113 (10.4) |
| 2024 | 4,589 (12.7) | 10,899 (30.2) | 6,686 (18.5) | 5,150 (14.3) | 4,490 (12.4) | 4,321 (12.0) |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2025, 32-33면

2024년 강력범죄(폭력) 범죄자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51세~60세가 20.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41세~50세(20.0%), 61세 이상(19.0%), 19세~30세(17.5%), 31세~40세(15.9%), 18세 이하(7.1%) 순이다.

10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18세 이하, 61세 이상의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0%, 10.7% 증가하였다. 반면에, 19세~30세, 31세~40세, 41세~50세, 51세~60세의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였다. 특히, 감소된 연령층에서는 41세~50세의 비중이 5.2% 감소하여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10년간 추이에 따르면, 61세 이상의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추세를 보이는 반면, 31세~40세, 41세~50세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추세를 보였다. 노인 강력범죄(폭력)의 발생비는 2015년 고령자 인구 10만명당 240.3건에서 이후 증감을 반복하다 2024년에는 244.5건으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지난 10년 동안 고령자 강력범죄(폭력)의 발생비는 1.8% 증가하였다.

37) 강력범죄(흉악)에는 살인, 강도, 성폭력, 방화죄가 포함된다.

<표3> 강력범죄(폭력)³⁸⁾ 범죄자의 연령별 분포 추이(2015년~2024년)

(단위: 명(%))

| 구 분 연도 | 18세 이하 | 19세~30세 | 31세~40세 | 41세~50세 | 51세~60세 | 61세 이상 |
|-----------|-----------------|------------------|------------------|------------------|------------------|------------------|
| 2015 | 17,473 (5.1) | 69,846 (20.5) | 66,854 (19.7) | 85,878 (25.2) | 72,091 (21.2) | 27,975 (8.2) |
| 2016 | 19,476 (5.6) | 71,847 (20.7) | 67,700 (19.5) | 83,495 (24.1) | 73,172 (21.1) | 31,172 (9.0) |
| 2017 | 21,043 (6.4) | 71,206 (21.6) | 62,248 (18.9) | 75,518 (22.9) | 68,168 (20.7) | 31,724 (9.6) |
| 2018 | 19,742 (6.3) | 65,263 (20.7) | 57,691 (18.3) | 70,394 (22.4) | 67,275 (21.4) | 34,408 (10.9) |
| 2019 | 18,622 (6.0) | 63,706 (20.5) | 55,356 (17.9) | 68,274 (22.0) | 66,364 (21.4) | 37,790 (12.2) |
| 2020 | 14,744 (5.3) | 56,781 (20.5) | 47,761 (17.2) | 59,608 (21.5) | 61,219 (22.1) | 37,248 (13.4) |
| 2021 | 13,614 (2.6) | 45,555 (19.8) | 38,134 (16.6) | 48,013 (20.9) | 49,987 (21.7) | 34,891 (15.2) |
| 2022 | 15,429 (3.4) | 48,217 (20.1) | 39,660 (16.5) | 49,258 (20.5) | 50,062 (20.8) | 37,745 (15.7) |
| 2023 | 15,316 (6.6) | 42,293 (18.3) | 37,972 (16.4) | 48,043 (20.8) | 48,431 (20.9) | 39,402 (17.0) |
| 2024 | 15,118 (7.1) | 37,365 (17.5) | 33,966 (15.9) | 42,704 (20.0) | 43,634 (20.5) | 40,447 (19.0) |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2025, 33-34면

(2) 재산범죄 발생 추이

2024년 재산범죄 범죄자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51세~60세, 61세 이상이 20.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41세~50세(18.8%), 19세~30세(18.7%), 31세~40세(15.5%), 18세 이하(6.2%) 순이다. 10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19세~30세, 61세 이상의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0.8%, 11.0% 증가하였다. 반면에, 18세 이하, 31세~40세, 41세~50세, 51세~60세의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였다. 특히, 감소된 연령층에서는 41세~50세의 비중이 6.0% 감소하여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지난 10년간 추이에 따르면, 61세 이상의 연령층이 차지하는 재산범죄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4> 재산범죄³⁹⁾ 범죄자의 연령별 분포 추이(2015~2024년)

(단위: 명(%))

| 구 분 연도 | 18세 이하 | 19세~30세 | 31세~40세 | 41세~50세 | 51세~60세 | 61세 이상 |
|-----------|-----------------|------------------|------------------|-------------------|------------------|-----------------|
| 2015 | 32,068 (7.7) | 74,537 (17.9) | 75,125 (18.0) | 103,263 (24.8) | 92,454 (22.2) | 39,168 (9.4) |

38) 강력범죄(폭력)에는 폭행, 상해, 협박, 공갈, 체포·감금, 약취·유인죄가 포함된다.

39) 재산범죄에는 절도, 장물, 사기, 횡령, 배임, 손괴죄가 포함된다.

| | | | | | | |
|------|-----------------|------------------|------------------|------------------|-------------------|------------------|
| 2016 | 33,088 (7.9) | 73,990 (17.6) | 73,600 (17.5) | 99,612 (23.7) | 94,609 (22.5) | 45,675 (10.9) |
| 2017 | 29,056 (7.2) | 72,242 (17.8) | 68,547 (16.9) | 93,332 (23.1) | 92,089 (22.8) | 49,502 (12.2) |
| 2018 | 26,497 (6.4) | 74,295 (17.8) | 68,247 (16.4) | 94,514 (22.7) | 96,872 (23.2) | 56,469 (13.5) |
| 2019 | 27,809 (6.3) | 78,871 (17.7) | 70,193 (15.8) | 96,831 (21.8) | 104,407 (23.5) | 66,384 (14.9) |
| 2020 | 28,855 (6.6) | 84,577 (19.5) | 65,093 (15.0) | 87,168 (20.1) | 98,996 (22.8) | 69,084 (16.1) |
| 2021 | 21,785 (6.7) | 66,852 (20.6) | 45,413 (14.0) | 59,078 (18.2) | 69,765 (21.5) | 61,244 (18.9) |
| 2022 | 24,414 (7.1) | 69,675 (20.3) | 48,910 (14.3) | 60,936 (17.8) | 70,182 (20.5) | 68,522 (20.0) |
| 2023 | 28,367 (7.7) | 73,201 (19.8) | 56,681 (15.1) | 67,441 (18.3) | 73,662 (20.0) | 70,645 (19.1) |
| 2024 | 25,114 (6.2) | 75,523 (18.7) | 62,750 (15.5) | 75,940 (18.8) | 82,332 (20.4) | 82,393 (20.4) |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2025, 31면

(3) 주요 범죄별 발생 현황

<표 5>를 살펴보면, 재산범죄와 강력범죄(흉악)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교통범죄는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4가지 범죄군 중에서 노인범죄 발생비가 가장 높은 범죄군은 재산범죄이며, 그 다음은 교통범죄, 강력범죄(폭력), 강력범죄(흉악)의 순이었다. 강력범죄(흉악)는 4가지 범죄군 중에서 발생비가 가장 낮았지만 지난 10년간 증가율은 26.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재산범죄의 발생비는 2015년 340.0에서 2024년 521.8로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2018년 이후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며,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41.2%, 44.1%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이후에도 계속 증가되어 2024년에는 전년 대비 5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력범죄(흉악) 역시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흉악범죄 발생비는 2015년 21.6에서 2024년 27.4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2017년(24.8%), 2019년(35.5%), 2024년(26.7%)에는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노인범죄가 단순한 경미범죄에 그치지 않고 강력범죄의 형태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5> 주요 범죄군별 노인범죄의 발생비 추이(2015~2024년)

(단위: 발생비, (%))

| 연도 | 구분 | 재산범죄 | | 강력범죄(흉악) | | 강력범죄(폭력) | | 교통범죄 | |
|------|----|-------|------|----------|-----|----------|-----|-------|-----|
| | | 발생비 | 증감률 | 발생비 | 증감률 | 발생비 | 증감률 | 발생비 | 증감률 |
| 2015 | | 340.0 | - | 21.6 | - | 240.3 | - | 507.2 | - |
| 2016 | | 377.4 | 11.0 | 23.4 | 8.4 | 249.9 | 4.0 | 534.0 | 5.3 |

| | | | | | | | | |
|------|-------|------|------|------|-------|------|-------|-------|
| 2017 | 395.4 | 16.3 | 27.0 | 24.8 | 241.8 | 0.6 | 502.6 | -0.9 |
| 2018 | 429.0 | 26.2 | 26.5 | 22.8 | 253.2 | 5.4 | 488.3 | -3.7 |
| 2019 | 479.9 | 41.2 | 29.3 | 35.5 | 263.8 | 9.8 | 512.5 | 1.0 |
| 2020 | 489.8 | 44.1 | 26.2 | 21.5 | 250.2 | 4.1 | 481.3 | -5.1 |
| 2021 | 436.3 | 28.4 | 24.4 | 13.1 | 227.0 | -5.5 | 418.4 | -17.5 |
| 2022 | 476.3 | 40.1 | 26.9 | 24.4 | 237.6 | -1.1 | 288.3 | -43.2 |
| 2023 | 469.5 | 38.1 | 26.7 | 23.6 | 243.1 | 1.2 | 296.0 | -41.6 |
| 2024 | 521.8 | 53.5 | 27.4 | 26.7 | 244.5 | 1.8 | 303.7 | -40.1 |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2025, 22-23면

2024년 65세 이상 노인범죄자 총 건수는 160,843건으로 남성이 121,240건(75.4%), 여성이 39,603건(24.6%)이다. 이 중에서 <표6>에 나타난 2024년 노인범죄자의 주요 형법범계를 살펴보면 재산범죄가 53,515건, 강력범죄(흉악)은 2,807건, 강력범죄(폭력)은 25,076건, 기타범죄가 12,946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의 경우 대체로 남성에 비해 낮은 건수를 보였으며, 재산범죄 18,733건(35.0%), 강력범죄(폭력) 4,692건(18.7%), 기타형법범죄 1,945건(15.0%), 강력범죄(흉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재산범죄가 53,515건으로 전체 노인범죄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이 중 남성은 34,782명(65.0%), 여성은 18,733명(35.0%)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남성 65~70세 집단이 18,225명(34.1%)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과 생계 문제 등이 재산범죄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 표6 > 노인범죄자 주요 형법범죄 현황

(단위: 건수, %)

| 2024년 | 계 | 남 | | | 여 | | |
|---------------------------|--------------------|------------------|------------------|------------------|------------------|------------------|------------------|
| | | 소계 | 65~70세 | 71세이상 | 소계 | 65~70세 | 71세이상 |
| 형법범계 | 101,170 (100.0) | 72,406 (71.6) | 40,241 (39.8) | 32,165 (31.8) | 28,764 (28.4) | 14,158 (14.0) | 14,606 (14.4) |
| 재산범죄 | 53,515 (100.0) | 34,782 (65.0) | 18,225 (34.1) | 16,557 (30.9) | 18,733 (35.0) | 8,599 (16.1) | 10,134 (18.9) |
| 강력범죄 (흉악) | 2,807 (100.0) | 2,691 (95.9) | 1,403 (50.0) | 1,288 (45.9) | 113 (4.1) | 67 (2.4) | 49 (1.7) |
| 강력범죄 (폭력) | 25,076 (100.0) | 20,384 (81.3) | 11,713 (46.7) | 8,671 (34.6) | 4,692 (18.7) | 2,546 (10.2) | 2,146 (8.6) |
| 기타형법 범죄 ⁴⁰⁾ | 12,946 (100.0) | 9,501 (73.4) | 5,754 (44.5) | 3,747 (29.0) | 3,442 (26.6) | 1,945 (15.0) | 1,497 (11.6) |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2025, 802면 재구성.

40) 기타형법범죄에는 명예, 권리행사방해, 신용업무경매, 주거침입, 비밀침해, 유기, 교통방해, 공무방해, 도주와 범인은닉, 위증과 증거인멸, 무고, 공안을 해하는 죄, 내란의 죄, 음용수에 관한 죄,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등이 포함된다.

3. 노인범죄의 연령별 현황

<표7>의 2024년 전체범죄 범죄자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51세~60세가 21.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41세~50세(20.7%), 61세 이상(19.2%), 19세~30세(17.5%), 31세~40세(16.8%), 18세 이하(4.5%)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전반적으로 노인 범죄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특히 61세 이상 범죄자는 2015년 185,219명(9.8%)에서 2024년 261,660명(19.2%)으로 증가하여 약 1.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뚜렷한 증가 추세로, 최근 고령화 현상과 함께 노인범죄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최근 고령자 인구가 2015년 6,775,101명에서 2024년 10,256,782명으로 51.4% 증가함에 따라 고령자 범죄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 증가로 경제활동 참가가 늘어나고,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경제적인 문제, 심리적 불안 등이 증가 원인임을 추론할 수 있다.⁴¹⁾

<표7> 전체범죄⁴²⁾ 범죄자의 연령별 분포 추이 (2015년~2024년)

(단위: 명(%))

| 구분 연도 | 18세 이하 | 19세~30세 | 31세~40세 | 41세~50세 | 51세~60세 | 61세 이상 |
|----------|-----------------|-------------------|-------------------|-------------------|-------------------|-------------------|
| 2015 | 71,035 (3.8) | 324,976 (17.2) | 376,218 (19.9) | 496,000 (26.3) | 435,511 (23.1) | 185,219 (9.8) |
| 2016 | 76,000 (3.9) | 341,896 (17.3) | 393,251 (19.9) | 498,953 (25.3) | 454,454 (23.0) | 209,101 (10.6) |
| 2017 | 72,759 (4.0) | 318,645 (17.5) | 345,590 (19.0) | 441,295 (24.3) | 424,809 (23.4) | 215,139 (11.8) |
| 2018 | 66,142 (3.9) | 293,734 (17.2) | 308,902 (18.1) | 400,370 (23.5) | 407,348 (23.9) | 227,590 (13.4) |
| 2019 | 66,247 (3.8) | 297,445 (17.3) | 300,789 (17.5) | 388,899 (22.6) | 413,869 (24.0) | 256,250 (14.9) |
| 2020 | 64,480 (4.0) | 284,508 (17.8) | 267,845 (16.8) | 342,322 (21.4) | 381,330 (23.9) | 256,000 (16.0) |
| 2021 | 54,017 (4.0) | 245,699 (18.4) | 220,350 (16.5) | 276,978 (20.8) | 306,270 (23.0) | 231,130 (17.3) |
| 2022 | 61,026 (4.6) | 256,395 (19.2) | 223,168 (16.8) | 271,002 (20.3) | 289,710 (21.7) | 230,857 (17.3) |
| 2023 | 66,758 (5.0) | 244,197 (18.3) | 223,101 (16.8) | 271,034 (20.4) | 285,548 (21.4) | 240,713 (18.1) |
| 2024 | 61,956 (4.5) | 238,779 (17.5) | 228,790 (16.8) | 282,510 (20.7) | 290,712 (21.3) | 261,660 (19.2) |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2025, 29면

<표8>을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노인범죄자의 주요 형법범죄 추이를 살펴보면, 재산

41) 대검찰청, 범죄분석, 2025, 22면.

42) 전체범죄란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를 모두 포함한 범죄를 의미

범죄, 강력범죄(흉악), 강력범죄(폭력), 교통범죄 모두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재산범죄는 110.4%, 강력범죄(흉악)은 86.2%, 강력범죄(폭력)은 44.6% 증가하였으며, 교통범죄는 12.2% 감소하였다. 특히 재산범죄의 경우, 2015년 39,168건에서 2024년 82,393건으로 약 2.1배 증가하였고, 발생비 또한 9.4에서 20.4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특히 2019년 이후 증가폭이 더욱 확대되면서 2024년에는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또한, 강력범죄(흉악)도 2015년 2,321건에서 2024년 4,321건으로 약 1.9배 증가하였으며, 강력범죄(폭력)는 2015년 27,975건에서 2024년 40,447건으로 증가하였다.

<표8> 주요 노인범죄⁴³⁾의 발생비 추이(2015~2024년)

(단위: 건, %)

| 구분 연도 | 재산범죄 | | 강력범죄(흉악) | | 강력범죄(폭력) | | 교통범죄 | |
|----------|--------|------|----------|------|----------|------|--------|------|
| | 발생건수 | 발생비 | 발생건수 | 발생비 | 발생건수 | 발생비 | 발생건수 | 발생비 |
| 2015 | 39,168 | 9.4 | 2,321 | 7.4 | 27,975 | 8.2 | 58,218 | 10.6 |
| 2016 | 45,675 | 10.9 | 2,697 | 8.1 | 31,172 | 9.0 | 64,232 | 11.6 |
| 2017 | 49,502 | 12.2 | 3,169 | 8.7 | 31,724 | 9.6 | 64,439 | 12.6 |
| 2018 | 56,469 | 13.5 | 3,281 | 9.1 | 34,408 | 10.9 | 64,087 | 14.7 |
| 2019 | 66,384 | 14.9 | 3,750 | 10.2 | 37,790 | 12.2 | 69,441 | 17.0 |
| 2020 | 69,804 | 16.1 | 3,723 | 10.7 | 37,248 | 13.4 | 68,529 | 17.9 |
| 2021 | 61,244 | 18.9 | 3,465 | 10.2 | 34,891 | 15.2 | 62,636 | 18.5 |
| 2022 | 68,522 | 20.0 | 3,977 | 9.7 | 37,745 | 15.7 | 45,881 | 17.2 |
| 2023 | 70,645 | 19.1 | 4,113 | 10.4 | 39,402 | 17.0 | 48,328 | 18.7 |
| 2024 | 82,393 | 20.4 | 4,321 | 12.0 | 40,447 | 19.0 | 51,109 | 20.2 |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2025, 31-36면에서 재구성.

IV. 노인범죄 예방에 대한 대책

1.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1)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도입

현재 우리 형사사법체계에서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의 경중, 범행 동기, 전과 여부,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활용되고 있

43) 61세 이상

으며, 특히 초범이거나 경미한 범죄의 경우 사회 내 선도와 재사회화를 도모하는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생계형 절도, 경미범죄 등 노인의 사회·경제적 환경과 연계된 범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 범죄자의 특성을 고려한 재사회화 및 선도 중심의 대응체계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노인범죄의 경우 빈곤, 사회적 고립, 역할상실, 건강 악화 등 복합적인 사회·경제적 요인이 범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 모든 범죄를 일률적으로 형사 처벌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은 재범방지나 사회복귀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초범이거나 죄질이 비교적 경미하고, 재범 위험성이 낮은 노인범죄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선도 조건을 부가하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란 통상의 기소유예 결정을 함에 있어 계속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범죄소년에 대해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결정을 하는 제도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소년범들에게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는 경미범죄사건의 경우 형벌을 부과하여 처벌하는 것은 전과자를 양산할 수 있으며,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통해 형사절차의 간소화와 경미범죄 사건에 대한 업무의 부담을 줄여 강력범죄 등 중대범죄에 수사권을 집중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⁴⁴⁾ 물론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현재 소년범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를 노인범죄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해당 제도가 형벌보다 재사회화와 재범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은 노인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에서도 참고할 수 있으며, 노인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제도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노인범죄자 중 초범이거나 경미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도입하여, 복지·상담·치료와 연계된 조건부 선도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생계형 범죄, 경미한 범죄 등 사회 내 교정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중심으로 사회복지기관 연계, 상담 및 치료,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을 실시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 및 사회참여 프로그램,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조건으로 부가함으로써 형사처벌보다 재사회화와 재범 예방 중심의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만 연령만을 기준으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적용하는 경우 헌법상 평등원칙(헌법 제11조)에 반할 우려가 있으므로, 단순한 연령 여부가 아니라 초범 여부, 범죄의 경미성, 재범 위험성, 생계형 범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노인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에서는 복지·상담·치료와 연계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제도의 실효적 운영을 위해서는 선도조건부의 내용, 이행 확인 절차 및 불이행시 조치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노인복지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2) 보호처분제도의 적극적 활용

44) 선영화, 앞의 논문(각주11), 143면.

2024년 기준 고령범죄자 160,843명 중 보호처분 경험이 없는 경우가 150,083명(93.3%)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보호처분 경험이 있는 경우는 284명(0.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처분 경험이 3회 이상인 경우도 13명에 그쳐 현행 형사사법체계에서 고령범죄자에 대한 보호처분이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⁴⁵⁾

반면 고령범죄자의 전과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고령범죄자 160,843명 중 전과가 없는 자는 39,680명(24.7%)에 불과하였으며, 나머지 약 75.3%는 1범 이상의 전과⁴⁶⁾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과 9범 이상인 경우도 21,923명(13.6%)에 달하여 상당수의 고령범죄자가 반복적인 범죄경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⁴⁷⁾

또한, 재범 현황을 살펴보면 재범자 84,572명 중 동종재범은 범행 후 1년 이내 3,720명(4.4%), 2년 이내 2,664명(3.1%), 3년 이내 2,332명(2.8%)으로 나타났으며, 이종재범 역시 1년 이내 3,562명(4.2%), 2년 이내 3,289명(3.9%), 3년 이내 3,631명(4.3%)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상당수의 고령범죄자가 형사처벌 이후에도 비교적 단기간 내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있음을 보여주며,⁴⁸⁾ 이러한 결과는 현행 형사사법체계가 벌금형, 집행유예, 자유형 등 처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 방지에 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현재 노인범죄는 일반법인 「형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노인범죄의 여러 유형을 크게 분류하면 흉악범죄와 생계형 범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생계형 범죄의 경우 흉악 범죄에 비해 죄질이 낮고 교화의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사건과 같이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의해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⁴⁹⁾

반면 노인복지법은 부양의무자와 보호자 개념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을 보호가 필요한 대상으로 전제하고 있다.⁵⁰⁾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또한 형사처벌 대신 환경의 조정과 품행의 교정을 내용으로 하여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미숙하고 사려가 부족하여 범죄적 충동에 빠지기 쉬운 소년을 성인범죄자보다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크고 원대한 장래를 가지고 있는 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형벌 대체적 보안처분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⁵¹⁾

물론 노인은 소년과 달리 완전한 책임능력을 가진 성인이므로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45) 대검찰청, 범죄분석, 2025, 818면.

46) 전과1범 17,583(10.9%), 전과2범 123,670(7.9%), 전과3범 9,791(6.1%), 전과4범 7,502(4.7%), 전과5범 6,055(3.8%), 전과6범 4,662(2.9%), 전과7범 3,804(2.4%), 전과8범 3,162(2.0%), 전과9범이상 21,923(13.6%), 미상 34,011(%)로 나타났다.

47) 대검찰청, 범죄분석, 2025, 812면.

48) 대검찰청, 범죄분석, 2025, 820-821면.

49) 박동수, “노인범죄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제5권 제1호, 한국범죄심리연구, 2009, 59면.

50) 노인복지법 제1조의2

1. “부양의무자”라 함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보호자”라 함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51) 김성돈, 앞의 책, 892-893면.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으나, 고령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취약성과 사회적 의존성의 측면에서 일정한 보호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초범이거나 죄질이 비교적 경미한 생계형 범죄 또는 사회적·경제적 취약성과 밀접하게 연계된 노인범죄의 경우에는 이러한 노인범죄자의 특성을 고려한 보호처분 적용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 특히 노인범죄의 상당수가 빈곤, 사회적 고립, 가족관계 단절, 역할 상실, 정신건강 문제 등 복합적인 사회·경제적 요인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한 형벌만으로는 범죄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고령범죄자에 대한 보호처분은 극히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는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고령범죄자의 특성을 고려한 보호적·치료적 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초범이거나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고령범죄자뿐만 아니라 재범 위험성이 있는 고령범죄자에 대해서도 보호관찰, 심리상담 및 치료명령, 사회봉사명령, 노인복지 관련 시설등에 위탁,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노인일자리 프로그램 참여 등을 포함하는 보호처분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는 처벌 중심의 사후적 대응을 보완하여 노인범죄의 원인이 되는 사회적·경제적 위험요인에 조기에 개입함으로써 재범을 예방하고, 궁극적으로 고령사회에 적합한 예방적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3) 노인전담재판부 및 전문심리체계의 도입

현행 형사사법체계에서 노인범죄자 역시 일반 성인범죄자와 동일하게 일반법원에서 사건이 처리되고 있으며, 노인범죄를 전담하여 심리하는 별도의 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고령화의 심화와 함께 노인범죄의 양상은 단순한 생계형 재산범죄를 넘어 폭력범죄, 교통범죄, 강력범죄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으며, 범죄 발생 배경 또한 빈곤, 사회적 고립, 건강 악화, 인지기능 저하, 심리적 불안정 등 복합적인 요인과 연계되어 있다.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할 때, 노인범죄 사건에 대해 일반 성인범죄와 동일한 절차와 기준만으로 대응하기보다, 노인의 특성과 범죄 유형을 고려한 전문적이고 개별화된 심리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소년범죄의 경우 원칙적으로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년법에 대한 교화개선 및 재사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이 특정 연령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전문심리체계를 운영하는 사례는 형사사법제도 내에서도 이미 존재한다. 물론 노인범죄와 소년범죄는 그 성격과 정책 목표가 상이하지만, 노인범죄 역시 연령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특성과 사회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전문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참고할 수 있다.

따라서 증가하는 노인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반 형사사건과 구별되는 노인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문심리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지방법원 내 노인전담재판부를 설치하여 노인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심리하고,

장기적으로는 독립적인 노인전담법원 도입 가능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노인전담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노인의 건강상태, 인지기능, 정신건강, 사회적 보호 필요성, 재범 위험성 및 사회복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화된 심리를 수행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사회복지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지역사회 지원체계와 연계한 보호적·치료적 개입도 함께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문재판체계의 구축은 노인범죄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한편, 노인범죄자의 인권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사회복지적 대응방안

(1) 사회참여 확대 및 새로운 사회적 역할 부여

노인의 경제적 취약성은 생계형 범죄를 포함한 일부 노인범죄의 주요 위험요인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노인의 경제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범죄예방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노인 일자리 사업, 공공근로사업, 지역사회 기반 돌봄활동 등과 같은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노인의 경제적 안정뿐 아니라 사회적 소속감을 통해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 은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무력감, 고립감, 소외감 등을 완화하여 범죄유발 요인을 사전에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노인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취업연계 프로그램과 자립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전체 노인일자리 사업의 80%를 차지하는 단순 노무직 수준의 일자리만으로는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어려우므로 노인일자리 사업의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일하고자 하는 노인들에게 지역 기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적, 기관간 편차를 줄이기 위해 수행기관의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수요처 개발, 종사자 교육, 신규 일자리모형 개발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기반 노인일자리 개발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⁵²⁾ 또한, 은퇴 이후에도 지속적, 유연한 일자리 제공을 위해 고용, 복지 관련 DB 정보를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선제적으로 관리한다면 이들이 일반 노동시장에서 퇴장한 후 고령자 노동시장에 진입한 후 겪게 되는 경력단절, 정보부족에 의한 이동비용 등을 줄임으로써 노인 일자리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⁵³⁾

더불어 노인범죄의 사회적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역할상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52) 신유미·변금선·최혜지·한동우·김형용, “노인일자리사업 전달체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참여자와 공급자 대상 질적인터뷰 결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제74권2호, 한국노인복지학회, 2019, 154면.

53) 최석현·하보란, “노인복지정책에서 일자리 지원사업 효용성 강화방안 연구”, 정책연구 2012-66, 경기연구원, 2012, 88-89면.

서는 노인들에게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특히 노인의 사회봉사활동은 노인범죄 예방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노인범죄의 사회적 원인이 주로 노인들의 사회적 역할상실로 인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적 차원에서 노인들에게 새로운 역할 부여가 필요하다.⁵⁴⁾

따라서 노인의 사회봉사활동, 지역사회 참여활동, 일자리 사업 참여 등은 노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지속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회적 관계망 형성과 지역사회 적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역할 회복을 지원하는 정책은 노인범죄 예방을 위한 중요한 사회복지적 대응방안이 될 수 있다.

(2)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기존의 노인복지기관이나 상담기관은 주로 일상생활 지원, 정서적 안정과 같은 복지 중심의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고령사회의 심화와 함께 노인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회복지기관의 역할 역시 단순한 복지서비스 제공 차원을 넘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체계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즉, 기존의 노인대상 상담·지원이 정서적 지지와 복지적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범죄와 연관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하는 방향으로 기능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의 적절한 정보공유와 연계가 필요하며, 사회복지사 또는 전문상담인력을 활용한 상담 및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범죄경력이나 개인정보의 활용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엄격한 보호를 전제로 하여야 하며, 정보수집 및 활용 범위는 노인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기관은 우울, 중독, 경제적 위기, 가족갈등, 사회적 단절 등 범죄와 연관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할 수 있는 상담 및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하며, 특히 정신건강복지센터, 노인복지관, 지역사회 통합돌봄기관 등과 연계하여 심리상담, 정신건강 치료, 위기개입 프로그램, 가족상담 등을 제공함으로써 범죄 가능성을 사전에 낮추는 예방적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과 노인의 개별적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범죄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맞춤형 프로그램은 일본의 고령수형자 처우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의 각 교정시설에서는 고령수형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후쿠이 형무소에서는 고령수형자를 대상으로 ‘재범방지 프로그램’과 ‘살아갈 의욕을 고취시키는 프로그램’⁵⁵⁾을 운영하고 있다. ‘재범방지 프로그램’은 건강·체력 유지에 관한 지도, 자기의 문제에 관한 지도, 장래의 생활계획에

54) 김기현, 앞의 연구서(각주20), 184면.

55) 살아갈 의욕을 고취시키는 프로그램의 목적은 고령수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활동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구축하여 「이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게끔 하고, 고령수형자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정신적 질환(인지증 등)을 예방하는 데에 있다.

관한 지도, 피해자의 감정을 이해하는 지도, 인간관계에 관한 지도로 구성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살아갈 의욕을 고취시키는 프로그램’은 문예·음악·원예·크라프트·강화(講話)·발표활동을 내용으로 구성되어 고령수형자의 심신의 건강 및 사회복귀 이후의 삶과 생활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⁵⁶⁾

노인의 연령, 건강상태, 학력, 직업경력, 가족구조, 사회적 관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복지·교육 프로그램은 노인의 사회적 고립과 심리적 불안정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특히 노인범죄는 경제적 빈곤, 역할상실, 가족해체, 정신건강 문제, 사회적 단절 등 복합적인 사회적 위험요인과 밀접하게 연관될 수 있으므로, 획일적 지원방식보다는 지역별 특성과 개인별 상황을 고려한 개입이 필요하며, 이러한 지역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경우 각 지역의 사회복지사들이 전문적으로 개입하여 노인들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회복 및 유지할 수 있도록 개인과 집단활동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사회 내의 기업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각 개인의 상황에 맞는 직업교육 프로그램 내지는 고용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함으로써 경제적인 궁핍함으로 인한 노인범죄 원인의 제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⁵⁷⁾

그러므로 노인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들이 정보공유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의 특성과 지역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범죄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하는 통합적 예방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노인범죄 예방뿐만 아니라 재범 방지와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기반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인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과거 노인범죄는 생계형 절도나 경미한 재산범죄 중심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재산범죄뿐만 아니라 폭력범죄, 강력범죄 등으로 범죄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으며,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결과라기보다는 빈곤, 사회적 고립, 역할상실 등 복합적인 사회·경제적 요인이 함께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범죄의 개념과 특징을 검토하고, 최근 노인범죄의 발생 현황과 유형별 추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노인범죄자의 증가율은 고령인구 증가율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으며, 특히 재산범죄와 강력범죄의 증가가

56) 강은형·권수진·원혜옥, “고령사회에 따른 노인수형자 처우방안”,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14, 205-206면.

57) 김기현, 앞의 연구서(각주20), 187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노인범죄를 단순한 개인의 일탈행위로만 이해하기보다 고령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의 산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대응방안으로 형사정책적 측면과 사회복지적 측면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형사정책적 측면에서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도입, 노인범죄 보호처분제도의 도입, 노인전담재판부 및 전문심리체계의 구축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노인범죄자의 특성을 고려한 개별화된 처우와 재사회화 중심의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회복지적 측면에서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새로운 사회적 역할 부여,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범죄의 근본적 위험요인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다만 노인범죄는 일반 성인범죄와 달리 연령에 따른 신체적·심리적 변화와 사회·경제적 취약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획일적인 형사처벌만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노인범죄에 대한 대응은 처벌 중심의 접근을 넘어 형사정책적 대응과 사회복지적 지원이 상호 연계된 통합적 접근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노인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뿐만 아니라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